



안심거래서비스 반환/지급요청서

성 명		접 수 번 호	
주 소			
휴 대 전 화		이 메 일	

본인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(주)(이하 “안심거래서비스사업자”)와 체결한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관련하여, 아래 명시된 사실관계로 인하여 안심거래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아래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/지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

- 아 래 -

1. 반환/지급 요청 금액

보 증 금	금	원 (₩)
-------	---	------	---

2. 반환/지급 요청 근거 사실관계

반환/지급 요청 근거: () 합의해제 () 계약위반 () 기타 사유 ()
[사실관계기입]

작성 시 유의사항

- 작성된 반환/지급요청서 상 접수번호와 보증금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기재 후 재접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“반환/지급 요청 근거 사실관계” 작성 시 계약 파기, 해지, 해제 등의 원인과 원인제공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, 사실관계 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/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.
- 반환/지급요청서 접수 이후, 요청서 상 명시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십(10)영업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.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이의신청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 기간 만료 이후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상의 반환/지급신청자 명의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. 단,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 당사자가 해당 보증금의 지급에 대한 부분을 합의한 서명날인된 서면확인서, 보증금의 지급에 대한 결정이 있는 법원의 최종판결 또는 법원의 공탁명령 제출 전까지 보증금이 지급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.
- 본 반환/지급요청서 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를 따릅니다.

신청일자:	년	월	일
신청인:	(서명 / 인)		